

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1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5. 5. 17.

발 의 자 : 송정현의원 외 5명

1. 개정이유

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하위 법규인 고성군의회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중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정례회 회기제한규정을 삭제(안 제3조)

3. 본 문 : 덧붙임

4. 참고자료

- 지방자치법령관련규정(법 제41조, 조례 제3조)

고성군의회 제 호

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회기) 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3조(회기) 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.</u>	<u>제3조(회기)</u> <u><삭제></u>